

2021년 시행 주요개정

◆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 변경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변경 전(원)	1,498,300	1,331,800	1,276,300	1,173,200	1,007,200	566,600
변경 후(원)	1,520,700	1,351,700	1,295,400	1,189,800	1,021,300	573,900

◆ 방문요양 1.49% 수가 인상 (본인부담금 15% 기준)

구 분	30분	본인부담금	60분	본인부담금	90분	본인부담금	120분	본인부담금
변경 전(원)	14,530	2,180	22,310	3,347	29,920	4,488	37,780	5,667
변경 후(원)	14,750	2,213	22,640	3,396	30,370	4,556	38,340	5,751
구 분	150분	본인부담금	180분	본인부담금	210분	본인부담금	240분	본인부담금
변경 전(원)	42,930	6,440	47,460	7,119	51,630	7,745	55,490	8,324
변경 후(원)	43,570	6,536	48,170	7,226	52,400	7,860	56,320	8,448

◆ 방문목욕 1.31% 수가 인상 (본인부담금 15% 기준)

구 분	차량이용 (차량 내)	본인부담금	차량이용 (가정 내)	본인부담금	차량 미이용	본인부담금
변경 전(원)	74,470	11,171	67,150	10,073	41,930	6,290
변경 후(원)	75,450	11,318	68,030	10,205	42,480	6,372

◆ 2021년 1월 1일부터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& 방문목욕 수가가 인상되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분의 본인부담금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.

◆ 서비스 이용 시,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본인부담금 납부를 불이행 시 차후에 민,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

희망재가노인복지센터